PURCHASE PROTECTION INSURANCE

The insurer (hereinafter 'the Company') AGREES with _____ (hereinafter 'the Policyholder') Purchase Protection Insurance Trust for the holders Of ___ and/or members of ____ who purchase items from the Policyholders, in consideration of the payment of the premium and subject to the limits of liability, exclusions, conditions and other terms of this Policy.

TO PAY the benefits described herein.

This Policy is effective for Twelve (12) months commencing at 12:01 a.m., _____and shall be renewable for twelve (12) month terms thereafter unless cancelled by the Company or the Policyholder.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

PART Ⅰ. DEFINITIONS

COVERED PURCHASE means an item purchased by an Insured and paid for by using an Eligible Account or the Covered Purchase made in ( ) per Policy schedule. For a purchase to be considered a Covered Purchase paid by an Eligible Account, the entire purchase amount for the item must have been made through the Eligible Account.

ELIGIBLE ACCOUNT means the Account(s) described in the Policy Schedule.

INSURED means the Insured described in the Policy Schedule.

MYSTERIOUS DISAPPEARANCE means the vanishing of a purchased item in an unexplained manner where there is an absence of evidence of a wrongful act by a person or persons.

STOLEN(THEFT) means Company regards theft as someone taking an insured item that does not belong to him without permission but exclude as loss and negligence.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

PART Ⅱ. INDIVIDUAL TERMINATION

An Insured's coverage shall terminate on the earliest of 1) the date the Insured is no longer eligible to participate ; or, 2) the date the Eligible Account defined as ineligible by the Policyholder' ; or, 3) the date this Policy is terminated.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

PART Ⅲ. DESCRIPTION OF COVERAGE

Subject to the Policy Schedule, if a Covered Purchase, or a Covered Purchase given as a gift, is stolen or damaged, benefits will be paid subject to Section 1., Purchase Protection : Valuation, up to the amounts described in Section 2., Purchase Protection : Scope of Coverage. Loss must occur within _____ of the date of the Covered Purchase made in ____ per Policy schedule. Coverage Period and Covered Properties are stated in the Policy Schedule.

Company will pay reimbursement within the limited of liability except for amount of deductible. Coverage is limited up to the original purchase amount.

If at the time any claim arises under this policy there be any other insurance covering the same loss, damage or liability, the Company shall not be liable to pay or contribute more than their ratable proportion of any claim for such loss, damage or liability.

1. Purchase Protection : Valuation

The Company shall be liable only for the lesser of the following amounts :

1) the amount of the Covered Purchase indicated on the eligible Account ; or
2) the actual cost to repair or replace the Covered Purchase with an item of like and quality.

With respect to Covered Purchases which consist of articles in a pair or set, the Company's liability shall be limited to the cost of any particular part(s) which may be stolen or damaged, unless the articles are unusable individually and cannot be replaced individually; provided, however, liability for items of jewelry or fine arts consisting of articles in a pair, set, or collection will not be more than the cost of any particular parts which may be stolen or damaged, without reference to any special value which such article or articles may have as part of such pair, set of collection.

2. Purchase Protection : Scope of Coverage

The maximum liability of the Company under this Policy is as indicated in the Policy Schedule.

Coverage limits for the Insureds are subject to limitations stated in the Policy Schedule.

PART Ⅳ. EXCLUSIONS

This policy shall not cover loss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

1) boats ;
2) motorized vehicles(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irplanes, watercraft, automobiles and motorcycles) or their motors, equipment and accessor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unication devices intended solely for use in the vehicle);
3) land or building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omes and dwellings) ;
4) travelers' checks, tickets of any kind, negotiable instruments, bullion, rare or precious coins, cash or its equivalent, philatelic or numismatic property ;
5) plants or animals ;
6) consumables and perishables;
7) items which the Insured damages through alteration (including cutting, sawing, or shaping) ; or
8) ser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erformance or rendering of labor or maintenance, repair or installation of products, goods, or property, or professional advices of any kind).
9) Used, rebuilt, remanufactured, Antiques and collection items
10)Application programs, operation system, other software
11)Rental, Lease or borrowing items under the care and control of insured
12)Real estate, furniture, mobile phone and jewelry
13)Losses before the contract of insurance program
14)Losses due to willful act of Insured, Assured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
15)Items purchased for resale, professional or commercial use
16)Losses covered by a manufacturer's warranty, recall or class action suit
17)Losses covered by Insured's exchange or refund policy
18)Items breakage, loss and theft from, in, or upon vehicles (including but not limited any land, water or air transportation)
19)Items which insured damage through alteration
20)Items can be made reproduction (including multimedia files, movies or music files)
21)Items breakage resulting from war or hostilities of any ki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vasion, rebellion, riot or civil commotion)
22)Items breakage resulting from attachment or provisional attachment by any

government, public authority or customs official

23)Items breakage caused by illegal activity or acts

24)Loss resulting from such as flooding, disappearance and fire

25)Service items of travel, reservation

26)Loss resulting from expendable goods or parts

27)Insured not care for cases such as delivery, conducting and indirect handling with jewels, camera and video recording device.

28)Arising out of, based upon such as earthquake, eruption, tsunami like as the natural disaster.

29)Ordinary abrasion such as wear, crack and corrosion with out of functional, harmful insect, wrong using.

30)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contributed to by or arising form :
Any chemical, biological, bio-chemical or electromagnetic weapon

31)Contamination by radioactivity from any nuclear fuel or from any nuclear waste and the radioactive, toxic, explosive or other hazardous, except for 29 article.

32)Items would be extinction due to exercise of public power.

33)Visual damage without functional matters (pitting, coloring, scratch, rust)

34)All cost from the storage of data affected from damage.

35)Transportation cost to repair affair.

36)In case of repair from an unlicensed agency.

37)No proof for accident claim. In case of mystery loss without the proof of illegal act.

38)Arising out of, based upon or attribute to any theft and loss : careless acts at public place such as subway, park etc. or absent without leave.(But insurer cover if insured conducted any safety actions as lock-up).
Stolen items must be reported as stolen to the police or an appropriate authority where the incident took place without hesitation.

39)Loss and theft at transportation without the attention.

Other exclusions will be given according to the Policy Schedule.

PART V. TERMS AND CONDITIONS

The coverage provided by this Policy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A. Notification of Claim :

If any covered loss occurs, notice must be provided to the Company without hesitation after the incident occurred. The Insured shall take all reasonable measures to protect, save, and/or recover the property.

B. Claim Forms :

The company or its authorized agent, upon receipt of a notice of claim, will furnish to the Insured the necessary forms for filing proof of loss.

C. Proof of Loss :

Written proof of loss including any required information necessary to support a claim must be furnished to the Company or its authorized agent at its said location without hesitation after the date of the incident.

For Purchase Assurance Claims, the Insured must complete the claim form and attach all requested documentation, including a legible copy of the card charge slip and/or store receipt and police report or other proof of loss.

D. Time of Payment of Claims :

Benefits payable under this Policy for any loss will be paid immediately upon receipt of the written proof of such loss and all required inform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claim. The Company may in any claim for damage recoverable hereunder, require the Insured to send the damage item to an address designated by the Company at the Insured's expense.

E. Payment of Claims :

All benefits payable will be paid to the Insured or, in the case of death, to the Insured's estate.

F. Misrepresentation and Fraud :

Coverage as to an Insured shall be void if, whether before or after a loss, the Insured has concealed or misrepresented any material fact or circumstance concerning this insurance or the subject thereof, or the interest of the Insured therein, or if the Insured commits fraud or false swearing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foregoing.

G. The Company's Right to Recover from Others :

If the Company makes payments, it is entitled to recover such amounts from other parties or persons. Any party or person to or for whom the Company makes payment must transfer to us his or her rights of recovery against any other party or person. The party or person transferring such must do everything necessary to secure these rights and must do nothing that would jeopardize them.

H. Obligation to Prevent Damage

Upon occurrence of any insured events,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shall exert efforts to prevent and alleviate the relevant damages. If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neglects to make such efforts due to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he Company shall deduct from the total damages an amount equal to the damages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or mitigated.

I. Statute of Limitation

The claim for insurance proceeds and the claim for return of insurance premium and surrender value shall extinguish unless exercised within three (3) years.

J. Choice of Law For Policy Disputes

The construc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policy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nd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disput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policy shall be submitted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K. Entire Contract : Changes :

This Policy, including any endorsements and attached papers, constitutes the

entire contract of insurance. No change in this Policy shall be valid until approved by an executive officer of the Company and unless such approval is endorsed and attached hereto. No agent has authority to change this Policy or to waive any of its provisions.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

PART Ⅵ. ADDITIONAL PROVISIONS

1. Policy Period. This Policy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Policy Effective Date shown on the first page of this Policy and will remain in force unless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is part Ⅵ.

2. Premium Adjustment. The premium due for this Policy stated in the Policy Schedule as attached to the Policy is a minimum and deposit premium only. Upon the termination of this Policy, the actual premium shall be excess against the deposit premium and then policyholder must pay an additional premium according to the accurate calculation. When the total premium actually adjusted are less than a minimum and deposit premium, refund premium is not payable.

The Policyholder should report all documents related in settlement of premium upon the termination of this policy.

3. Examination and Audit. The company shall be permitted to examine the Policyholder's records relating to the Policy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and upon reasonable advance notice at any time during the Policy term and within three years after expiration of the Policy or until final adjustment and settlement of all claims hereunder, whichever is later.

4. Assignment. This Policy is not assignable, but benefits may be assigned.

5. Cancellation. The company may cancel this Policy at any time by written notice delivered to the Policyholder or mailed to the last address as shown on the records of the Company, stating when, not less than 31 days thereafter, such cancellation shall be effective; the policyholder may cancel this policy at any time by written notice delivered or mailed to the Company effective on receipt or on such later date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ce.

In the event of such cancellation by either the Company or the Policyholder, the Company shall promptly return the unearned premium paid, if any, and the Policyholder shall promptly pay the earned premium which has not been paid. Such

cancella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originating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cancellation.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

Being Stolen Hazards(Risks) Exclusion Clause

It is agreed and understood that otherwise subject to the coverage, exclusions, provision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the Policy or endorsed thereon, we do not cover risks of being stolen

Special Clause for Extension on Covered Purchase

Notwithstanding the exclusions on Section 4. in the schedule, if a covered purchase (_____) is stolen or damaged, benefits will be paid subject to Section 1 (Purchase Protection: Valuation), up to the amounts described in Section 2.(Purchase Protection: Scope of Coverage) Other term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limitations stated in the Policy Schedule and its coverage.

Special Clause for Fire Risks Coverage

Notwithstanding the exclusions on Section 4. in the schedule, The covered purchase will be covered the loss resulting from fire. Other term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limitations stated in the Policy Schedule and its coverage.

Terrorism Exclusion Endorsement(NMA 2952)

insurance does not cover any loss, destruction or damage occasioned by or through or in consequence of or contributed to, directly or indirectly, by:

acts of terrorism committed by a person or persons acting on behalf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organization.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

No (re)insurer shall be deemed to provide cover and no (re)insurer shall be liable to pay any claim or provide any benefit hereunder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 of such cover, payment of such claim or provision of such benefit would expose that (re)insurer to any sanction, prohibition or restriction under United Nations resolutions or the trade or economic sanctions, laws or regu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United Kingdom or United States of America.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의 다수구매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제1항의 상품의 다수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제1항의 단체의 총 피보험자 수는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상한도액) 피보험자의 보상한도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보상한도액)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상한도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상한도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 ①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품구입일	날 인

②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 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 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피보험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5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④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의 피보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제7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단,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8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 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제1조(보험료의 정산)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계약의 계약자는 카드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해준 카드회사, 카드회사의 대표자, 카드회사를 상품판매자로 하는 제휴계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자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품구입일	날 인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 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5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

산기간 (이하 「정산기간」 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6개월 , - 기타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6조(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5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피보험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정산기간 동안의 피보험자 수를 통지받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실제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 후 위 제6조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frac{(\text{정산기간 시작일 피보험자수} + \text{정산기간 종료일 피보험자수})}{2} \times \text{1인당보험료} = \text{실제보험료}$$

④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단,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9조(적용특칙)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Waiver of Subrogation

The Insurance shall not exercise Subrogation Rights against ( ) written in the policy.

In addition, the insurer may not exercise the right of subrogation for debris. In other words, the insurer does not acquire the debris even if the claim is paid.

However, this insurance does not cover any loss, destruction or damage occasioned by or through or in consequence of or contributed to, directly, by willful act or willful negligence of the ( ) written in the policy.

대위 포기 조항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　　)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회사는 잔존물(잔해물)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도 잔존물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 이 보험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　　)의 고의적 행위 또는 고의적 과실에 의한 또는 이를 통해 발생하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손실, 멸실 또는 손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외직접구매물품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 특칙)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있어서 회사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 3장 보장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매수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매한 물품(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장기간 중에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그 재구매비용 (재구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용과 관세를 포함합니다)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한 쌍이나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경우 물품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난 또는 파손된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③한 쌍이나 세트 또는 모음으로 구성된 물품(보석류나 미술품 등)은 해당 물품이 한 쌍, 세트 또는 모음의 일부로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며, 도난 또는 파손된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④제1항의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기간을 따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제 4장 면책 사항 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물품 또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키거나 묵인 하에 생긴 손해

3. 선박,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나 이들의 모터, 장비와 부속용품 등

4. 토지 또는 건물, 영구적으로 설치된 장치, 시설 및 구조물 등

5. 여행자 수표, 모든 종류의 티켓, 양도성 증서, 금은괴, 희귀하거나 고가의 동전, 현금 또는 동등한 물물, 수집 우표 또는 화폐 등

6. 해충에 의한 파손

7. 식물 또는 동물

8. 소모품 및 부패하기 쉬운 것

9. 피보험자의 변경작업(절단, 재봉, 톱질 또는 변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파손된 제품

10. 전문적인 서비스(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노동 또는 보수유지의 이행 및 제공, 제품, 상품 또는 재산의 수리 및 설치, 도움 및 지원 라인에서 보증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조언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문적인 조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주변장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11. 정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부정 수단(사기), 점진적인 악화, 오용에 의한 손해

12.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

13. 전쟁 또는 모든 유형의 적대행위(침략, 폭동, 내란, 소요 또는 시민소동 등)

1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5. 위 제1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6. 정부, 공공기관 또는 세관공무원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17. 밀수품(또는 금제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8. 천재지변(홍수, 태풍, 지진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9. 제3자 또는 일반운송업자(항공사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자가 운송업을 겸하는 경우 계약자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잘못 배달된 물품

20. 일반대중 또는 단체의 이용, 회원집단에 개방되어 있는 위치나 장소에서 잠금장치나 보호 없이 피보험자 또는 기타 책임자가 팔이 닿을 수 있는 거리보다 멀게 공공장소에서 방치하거나 주의, 보관, 관리에 태만하여 도난을 당한 물품. 그러나 피보험자의 근무처, 학교, 종교사원은 공공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 주거용으로의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 기타 차량 또는 공공운송수단(비행기, 기차, 버스, 보트, 유람선, 레저차량 또는 기타시설 공공운송수단을 포함하나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의 내부 또는 이용 중 도난을 당한 물품.

22. 재판매, 직업적이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물품

23. 건설현장에 보관된 제품

24.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렌트, 리스 또는 빌린 물품

25.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 없이 분실한 물품과 원인 불명으로 사라진 물품(분실의 유일한 증거가 설명되지 못하거나 그 물품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아무런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6. 중고품 및 재생 물품, 재조립 물품, 재제작 물품, 이전에 누군가 소유한 물품

27. 모든 종류의 수집품 및 골동품

28.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29.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품질보증정책(구매만족보장 등의 서비스 포함)에 해당하는 손해

30. 통상적인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위험손해

31. 보험의 목적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

32. 부동산, 가구, 휴대폰, 보석

33. 보험 계약 이전에 발생한 손해

34. 제조사의 제품 보증, 리콜 혹은 집단 소송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

35.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교환 또는 환불규정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

36. 동영상 및 음악 파일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파일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37.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품이나 공정한 법 집행 과정 중 파손된 상품

38. 침수, 분실, 화재에 의한 제품의 멸실

39. 용역 및 분할되어 공급되는 상품 또는 여행, 예약 등의 서비스 상품

40. 피보험자가 보석류, 카메라, 비디오 녹화장비를 운반하거나, 관리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취급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손해

41. 화학적, 생물학적, 생화학적 혹은 전자기의 무기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거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손실 혹은 파손

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43. 제품이 가진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구매물품에 대한 재구매비용(재구매시 발생되는 배송비용과 관세를 포함합니다)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보험증권에 자기부담금 적용방식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②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수의 피보험자를 포괄하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간단위별 손해율 또는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총 보상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Purchase Protection Insurance 를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6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와 예상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전에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호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Purchase Protection Insurance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Purchase Protection Insurance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안경 및 렌즈 판매업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안경 및 렌즈 판매업자가 계약자가 되고 안경 및 렌즈 관련 (　　)서비스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가 보험가입을 승인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 보장조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안경 및 렌즈의 파손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장 면책조항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When the covered product can be repaired through simple part replacement and/or fitting
2. Scratch on the Lens
3. Robbery or Simple Missing
4. Shipping Cost incurring when repair or exchange of the product
5. Fundamental defect of the product or the damage can be covered by Maker's Warranty or Customer Service of the Manufacturer
6. Wear and tear, scratch and/or weakening following the passage of time
7. All other exclusions indicated on the wording